

## 국내외 재난에 '정밀 공간정보'로 신속 대응

- 국토지리정보원,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업무협약(MOU) 체결
- 협력 범위 해외 재난까지 확대, 정기 협의체 운영 등 본격 추진

-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(원장 조우석)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(원장 오금호)이 정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.
-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 등 고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해 국내·외 재난에 대한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현하고자, 오는 6월 27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한다.
- 두 기관은 공간정보, 재난 대응·연구 분야의 국내 대표기관으로, 공간정보 데이터 기반의 안전 대한민국을 구현하고자, 지속적('13년도, '21년도) 업무 협약을 통해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.

\* ('13년) 공간정보의 국내 재난분야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및 기술 교류  
( '21년) 국내 재난대응을 위한 국토위성영상 및 가공 정보의 제공

- 그간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 재난 발생 지역·상황에 대한 최신 공간정보를 서비스해 왔으며, 2023년에는 재난 관련 국제기구인 '인터네셔널 차터'\*에 가입\*\*해 해외 재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역량도 확장해 나가고 있다.

\* International Charter Space and Major Disasters: 전 세계 주요 재난·재해에 대해 신속한 대응·분석 지원을 위해 국가·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제기구

\*\* 국토지리정보원 : 위성보유·운영기관(Data Contributor), '23.4월~  
국립재난안전연구원 : 공식 사용기관(Authorized User), '10.9월~

- 이번 협약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의 협력 범위를 기존 국내에서 해외 재난까지 확대하고,

- 국·내외 재난상황(산불, 풍수해 등)에 대한 국토위성의 긴급촬영, 디지털트윈 기반 국가 재난관리 체계 구현에 대한 상호 협력과 국토위성 활용실무 위원회\*를 통한 정기 교류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.

\* 국토위성의 활용 수요 발굴 및 대외 활용 촉진 등을 위해 국내 중앙·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(위원장 : 국토위성센터장, '21년~)

□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“공간정보는 재난 안전정책의 핵심 인프라로,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의 협업은 공간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회”라며, “앞으로도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안전 대한민국 구현에 기여하겠다”고 밝힐 예정이다.

-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오금호 원장은 “양 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연결하고, 기술을 접목시켜 실질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함께 설계해 나가겠다”며, “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한층 정밀하고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것”이라고 전할 예정이다.

□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위성의 활용가치를 해외재난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, 재난분야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위상을 더욱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(국토지리정보원) 국토위성센터	책임자	센터장 안종태 (031-210-2790)
		담당자	연구관 박수영 (031-210-2795)
		담당자	연구사 윤혜원 (031-210-2797)
	행정안전부(국립재난안전연구원) 재난정보연구실	책임자	실장 김필성 (052-928-8300)
		담당자	연구관 이준우 (052-928-8310)

## 국토지리정보원 -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업 무 협 약 서

국토지리정보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(이하 “양 기관”) 국가 공간정보의 활용 가치 창출을 통한 국내·외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분야별 전문역량을 기반으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데이터 공동이용 및 기술 협력을 통해 상호 적극적 노력으로 국내·외 재난의 효과적 대응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본원칙)** 양 기관은 상호협력에 있어 각 기관의 규정을 존중하고 호혜 및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적극 협력한다.

**제3조(협력분야)** 양 기관은 ①기관 보유의 국내·외 재난발생 지역 데이터, 각종 연구성과의 공유 및 활용결과의 환류, ②고유업무 등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교류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상호 협력한다.

1. 국토지리정보원은 아래 각호의 역할을 담당한다.

가. 국내·외 재난대응을 위한 국토위성 긴급 촬영 및 긴급 공간정보 제공  
나.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·관리하는 국가 공간정보의 제공

2.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아래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한다.

가. 국내·외 재난분야 내 공간정보 활용 업무 및 연구 성과의 환류  
나. 디지털 트윈 기반 재난관리 체계 및 재난관련 연구 성과의 제공

3. 양 기관은 아래 각호와 같은 공통의 역할을 수행한다.

가. 협력활동의 효율적 수행 및 성과공유를 위한 정기적 협의체 활동  
나. 도출된 성과에 대한 국내외 홍보추진

**제4조(협력이행)** 제3조의 협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,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**제5조(비밀유지)** 양 기관은 상호 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와 자료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,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,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
**제6조(외부 공개)**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얻은 성과를 외부(공공기관, 국가기관, 언론 등)에 공개하는 경우 상대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, 양 기관이 협력하였다는 문구를 명기한다.

**제7조(발효)** 이 협약은 상호 협약서에 서명(날인)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협의 또는 일방인 서면으로 종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.

**제8조(협약의 해지)** 양 기관은 대·내외 적으로 본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호협의를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.

**제9조(권리·의무의 승계)** 일반 당사자의 명칭, 기관장 변경 등 단순사항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협약에 따른 권리, 의무는 포괄 승계된다. 단, 상황 변화에 따라 협력분야에 대한 변경은 가능하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,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하고, 각 1부를 보관한다.

2025년 6월 27일



국토지리정보원  
원장 조우석



국립재난안전연구원  
원장 오금호